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규정(안 제40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율 의무화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21853호, 2026. 7. 7. 공포, 2027. 1. 8. 시행)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 강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「외국인고용법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되는 14개 체류 자격 중 취업 가능 분야의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8개 체류자격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외국인근로자가 채용 전에 사전에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일하게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고유식별정보 취급 근거 추가(안 117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이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 및 효율적인 이력 관리 도모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무 추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교육 이수자 관리, 이수확인서 발급, 개인정보 정정 신청 등 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용자 불편 최소화 및 이수자 권익 보호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,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규정 (안 별표 1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산업재해의 발생 유형과 원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재해 예방
-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21853호, 2026. 7. 7. 공포, 2027. 1. 8. 시행)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정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,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의무 적용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적용 제외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4.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(안 별표 35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,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21853호, 2026. 7. 7. 공포, 2027. 1. 8. 시행)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,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한 경우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부과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체계 강화
-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 및 불법영업을 차단하여 국가 인증 교육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, 국민과 적법한 교육기관의 권익 보호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